

신용정보 활용체제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,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

가. 이용목적

- (1)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
- (2) 채권추심
- (3) 마케팅
- (4)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나. 신용정보의 종류

(1) 식별정보

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,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,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),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, 사업자 및 법인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 등

(2) 신용거래정보

(가) 개인신용거래정보 : 대출,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,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대지급정보, 어음 및 수표 부도정보 등

(나) 기업신용거래정보 :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, 연체정보, 대위변제 및 지급정보, 어음 및 수표 부도정보, 및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

(3) 금융질서문란정보

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

(4) 신용능력정보

회사의 개황,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, 재무상태,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,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

(5) 공공기록정보

국세,지방세,관세,과태료,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,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,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,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,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

2.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가. 제공대상자

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정보회사,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
나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- (1)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, 수집, 보관, 제공
- (2)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다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(1) 식별정보
- (2) 신용거래정보
- (3) 금융질서문란정보
- (4) 신용능력정보

3.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가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당사와의 거래관계 존속시 또는 고객정보제공동의 철회시까지

나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고객정보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즉시 문서파쇄기를 통한 세단 및 파일 삭제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
4.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가. 본인정보의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권 (법 제35조)

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나.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(법 제36조)

신용정보주체는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,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·중지하는 경우 그 거절,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,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·주소·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다. 본인정보의 제공, 이용 등의 철회 요구권 및 연락중지 요구권 (법 제37조)
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, 유무선통신, 서면 등을 통회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라.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(법 제38조)
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마.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권 (법 제39조)

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5. 신용정보 조회 담당 부서

- * 소속 : (주)하나자산신탁 신용조회 담당부서
- 성 명 : 명석민 팀장
- TEL : 02-3287-4613
- FAX : 02-3452-0730
- E-mail : smmyoung@hanafn.com